

우리 나라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관련 지방세감면을 중심으로

李仁宰** · 盧賢燮*** · 張碩午****

〈목 차〉

- | | |
|----------------------------|------------------------------------|
| I. 서론 | IV.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의 개선방안 |
| II. 창업·벤처기업과 조세지원 | V. 결론 |
| 1. 벤처기업의 유형과 범위 | 참고문헌 |
| 2.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조세지원 | Abstract |
| III.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
|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I. 서 론

전반적인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산업구조조정을 선도할 벤처기업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을 금융, 기술, 세무행정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고비용·저효율에 기인한 경제위기에

* 이 논문은 2001년 동주대학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주대학 비즈니스정보계열 교수

*** 경남정보대학 경영정보계열 교수

**** 한국자치경영협회 책임전문위원, 경영학박사

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업지원시책을 기술집약적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포함)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1997년 3월 31일에 '중소기업 창업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대책'을 확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8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벤처기업 관련 창업과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보다 더 많은 특례조치를 두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벤처기업의 배태조직 및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규명하거나 벤처캐피탈회사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벤처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조달 실태 등을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도출하고 국가차원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창업중소기업 관련 지방세감면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¹⁾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로 나눌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과 기타 법에 의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제도(특히 지방세감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관련 세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제3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살펴보고, 제4

1)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의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노현섭(2000)을 참조.

장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제5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창업·벤처기업과 조세지원

1. 벤처기업의 유형과 범위

벤처기업(venture company)은 신기술(특히 컴퓨터, 멀티미디어,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기술),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를 사업화 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벤처기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투자위험성이 크나(high risk) 사업화에 성공하면 높은 이익(high return)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총칭한다. 벤처기업은 모험기업, 신기술개발기업, 하이테크 기업, 기술집약기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서는 "벤처기업은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2)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우수기업 등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속하여야 하며, (3) 벤처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벤처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1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개관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1)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업종²⁾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중 한 가지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하여야 하며,³⁾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

2) 중소기업해당 업종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있다.

행령(제3조 제2호)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시 종업원 수,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대한 기준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다음 <표 1>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표 1>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① 해당 업종	· 모든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
②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③ 독립성 기준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④ 졸업 제도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적용 유예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그 후에는 매년 찬단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50인 미만 - 이의 업종: 10인 미만	·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 제조업: 100인 미만 - 광업, 건설, 운수업: 50인 미만 - 이의 업종: 10인 미만

주1) ①, ②,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중소기업에 해당함. ②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은 2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2)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을 예시하면, 전기·가스,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수 업종이 있음

3)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이, 여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가 아닐 것.

1.2 벤처기업의 유형과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벤처기업의 범위

구 분	벤처기업 해당 기준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창업후 7년 이내에 벤처캐피탈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투자하거나 자본금의 10% 이상인 주식을 인수한 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신기술개발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기술평가기업	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1.3 벤처기업 해당업종

위에서 설명한 벤처기업의 범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현재 업종구분 없이 거의 모든 업종에 있어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③ 오락업 및 문화업, ④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벤처기업의 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 제1항).

1.4 벤처기업확인요령 및 절차

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3조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 등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조세지원

2.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동등한 수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창업중소기업(벤처창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총 6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준다.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은 ①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조특법 제6조 제1항),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조특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business incubator)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에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지역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과 업종은 같다.

2.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

벤처기업이 창업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거나 ② 벤처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3> 창업중소기업과 벤처창업중소기업의 비교

구분	창업중소기업	벤처창업중소기업	비 고
정의	· 2003. 12. 31. 이전에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창업지역	· 수도권 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함 ·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후 대도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지역은 상관없음 · 대도시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 수도권의 범위는 지방세법의 대도시의 범위와 차이가 있음
창업기간		· 창업 후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그 확인받은 날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됨	·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비벤처중소기업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주) 1. 수도권은 과밀억제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과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과 성장관리지역[남양주시(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함), 양주군(주내면, 백석면, 장흥면에 한함), 포천군(소흘읍에 한함)]을 의미함.

먼저,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세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①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② 벤처기업은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③ 벤처

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해야 한다.⁵⁾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수도권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위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창업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Ⅲ.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과 기타 법에 의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은 직접적인 세제지원인 반면 기타 법에 의한 지원은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세법 이외의 법을 통해서 지원되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을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 지방세감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3.2.절), 본 절에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지원에 대해 개관한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즉,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 4>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⁶⁾

- 4) 따라서 기존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되면서 조특법(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
- 6) 또한, 관련 세법의 조세지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는데, 직접지원은 소득의 비과세, 세액

<표 4>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

관련조세	감 면 내 용
법인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창업 벤처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100% 감면)함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 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100% 감면)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함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
창업기업투 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공장설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공제, 세액감면 등 세액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이고, 간접지원은 손금산입한 금액의 환입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창업의 초기단계로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직접 및 간접 조세지원과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현섭(2000, pp. 457~458)을 참조.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위에서 살펴본 조세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세관련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 등록세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표 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내 용	비 고
등록세·등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전액감면 	전액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5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 과세연도)간 · 50% 감면 	50% 감면

- 주1) 취득세와 등록세는 1997년 1월 1일 이후 1999년 8월 31일까지는 납부세액을 75%를 감면하였으며, 1999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전액 감면함.
-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감면되지 아니함.
- 3) 감면기간의 적용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이후에 2년간 감면을 받다가 그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되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감면을 또 받게 되므로 최장기간은 4년 이내에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4)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7)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및 선박 등이 해당하며, 소유권 이외에도 저당권, 재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만 감면대상이 되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재산이나 구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2 취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 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 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 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2.4 기타 지방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는 부동산(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그 취득일부 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부칙(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에 따른 구 지방세법(법률 제 5615호, 1998년 12월 31일 개정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적용; 행자부세정 13407-196, 2001. 8. 8.].

지방세법이나 시·도세 감면조례에서는 감면을 신청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어 지방세를 감면신청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7항)에서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감면 신청규정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제292조)을 준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IV.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지원 제도(즉 지방세감면)는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미 여러 차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으나,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벤처기업의 정의(및 범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이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4 가지 정의 등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폐가 너무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법령의 개폐가 새로운 벤처기업의 유형을 포함시키고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잦은 법령개

8)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었으나, 1999년 8월 31일 등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었다.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에 입주하여 창업하여야 한다. 즉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단지외 벤처빌딩 이외에 창업하는 기업은 조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은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함께 입주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업종에 따라 자기에겐 적합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적절한 입지에 벤처단지 또는 벤처빌딩이 없다면, 이 경우에 벤처기업은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벤처단지 등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기에겐 적합한 입지를 포기하고 이미 조성된 다른 벤처단지에 입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단지 등으로 입주할 것을 권장하여야 하나, 벤처단지 등에 미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하기보다는 감면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폐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 당시 조세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 적용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업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이 배제된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감면조항을 기존의 창업중소기업에 감면조항에 추가한 결과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으로 이미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관련 법에서 다시 업종을 제한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벤처기업 해당업종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중소기업,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현재 우리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첨단 지식 또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벤처·창업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세정, 금융, 기술, 입지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세법을 개정하였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과 기술평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로 나눌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과 기타 법에 의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 중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 보았는데, 관련 세법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창업)중소기업을 추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지방세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중소기업,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업무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허용범위 내에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애로 없이 기술개발과 신상품개발 등 회사 경영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벤처기업 관련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완화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세청(2002), 중소기업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2. 김선홍(1997),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기업경제 제46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 14~22.
3. 노현섭(2000),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경영정보연구 제4집, pp. 443~467.
4. 안성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관한 고찰,” 공인회계사 (2002년 6월), pp. 54~60.
5. 양현봉·주현·조영삼(1998), “한국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및 육성방안,” 벤처경영연구, 제1호, pp. 129~153.
6. 이장우·장수덕(1998),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 69~95.
7. 이재규(1998),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구: SBA와 NFIB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1호, pp. 195~216.
8. 조형래(1988),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방안,”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 129~153.
9. 중소기업청(2002), 벤처기업 확인요령.
10. 중소기업청(2002), 벤처기업 확인업무 지침.
11. 중소기업청(2002), 2002 창업지원가이드.
12. 최덕규·노현섭·김영희(1999),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조세지원,” 경영논총, 제20집,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Lee, In-jae · Roh, Hyun-sub · Jang, Seok-oh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i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 for venture company in Local Tax Law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부록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10~30%를 매년 납부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접대비 인정 한도 우대	인정한도 우대: 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0.06~0.2%)	법인세법 제25조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경우 특별 부가세(양도소득세)의 75%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미리 비용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구조조정에 대한 세금 지원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부동산 이전시 양도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사업전환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과세를 유예 받거나, 50% 감면중 선택하여 적용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6년간 납부할 세금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연간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평균 신장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 ① 초과분의 일정율을 소득세에서 공제, ② 초과분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25조
주권상장 또는 협회 등록 중소기업 의 사업손 실준비금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중소기업의 연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손금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최저한세 적 용한도 우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 우대: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 표준×12%(일반법인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법인세법 제72조
기업구매전용 카드사용 등에 대한세 액공제	물품구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판매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물품대금결제를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사용할 때 사용액의 0.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부록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계속)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②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부록 2]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함께 적용되는 조세지원

구분	지원 내용
공장지방이전 특별 부가세 감면	· 신공장 토지건물취득시 : 양도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신공장 기계장치취득시 :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2년거치 3년분할 익금환입)
본사지방이전 특별 부가세감면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100% 면제 · 그 후 5년간 50% 감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공장(본사)에 대한 세액감면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100% 면제 · 그 후 5년간 50% 면제 ·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 수입금액의 3%,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5%를 납부세금에서 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 입주후 소득발생한 사업연도부터 6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5% 세액공제 · 특정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2001. 6. 30까지 투자분)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사원용 임대주택 등 취득가액의 3% 세액공제 · 기숙사 운용소득에 대한 세금의 50% 감면